

10월 1일(국군의날)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
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-수정

가. 년 출석인정 일수

-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(15일 이내) 로 하며,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(10일 이내) 로 한다.

나.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

- ① 학원 수강
- ② 해외 어학연수
-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
- ④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
-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(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)
- ⑥ 사설 학원, 종교단체,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
- ⑦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

다. (미인정 결석 처리)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 (체험학습 불허사항)

- ①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
-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
-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
- ④ 다음 표는 학교가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해당일.

-다 음-

교외 체험학습 불인정 기간(10월 이후)			
10	07일 - 15일	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(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)	1, 2, 3학년 해당
	28(29일)일 - 11월 1일	인문학대전 주간	1, 2, 3학년 해당
11	11월 26일 - 12월 2일	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(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)	3학년 해당
12	10일 - 17일	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(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)	1, 2학년 해당
	19일	학교행사 (서송골 문화축제) 기간	1, 2, 3학년 해당

● 위의 내용은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*변경사항: 불가피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하여

- 1) 기존 12월 30~31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기간 삭제.
- 2) 개학일과 방학일이 속해있는 주간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2일~3일은 교외체험학습신청 가능기간으로 인정함. 단 그 사유는 가족여행등으로 한정함. (위 나항에 해당하는 7가지 항목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.)